

# 목포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

[시행 2017.10.26.] [목포해양대학교규정 제646호, 2017.10.26., 제정]

제정 2017.10.26.(제646호)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7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목포해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을 받은 자)을 소지한 학생을 말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  - 가.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
  - 나. 교수·학습 지원
  - 다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, 개인상담
  - 라.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
  - 마. 취업진로 지원
  - 바. 장애학생 이동지원
  - 사.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
  - 아.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
  - 자.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
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
  - 가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  - 나.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
  - 다. 취학편의 지원
  - 라. 정보접근 지원
  - 마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

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

3. 교직원·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의 행정 및 장애학생 관련 전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운영)** ① 센터의 업무 중 교수·학습에 관련된 업무는 교수·학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업무 중 상담에 관련된 업무는 학생상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보칙)** 이 규정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칙 (제646호, 2017.10.26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